

8. 土地超過利得稅法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5,194號 1996. 12. 31

주요골자

- 가. 산업용지 공급원활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에 대하여 증설예비용 토지의 인정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영 제7조 제2항).
- 나.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판정 유예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(영 제23조 제3호).
- 다. 서민금융기관인 농·수·축협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이 저당권의 실행등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년간 유휴토지판정을 유예하고, 염수입 개방에 따라 폐업하게 되는 염전에 대하여는 4년간 유휴토지판정을 유예함(영 제23조 제6호 및 제19호).
- 라.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전국평균가변동율과 정기예금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율(정기과세 기간 33.1퍼센트, 예정결정기간 10퍼센트)중 높은 율을 기준으로 하면서 당해 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1996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을 정상지가상승율로 하도록 함(영 제36조 제3항).

개정이유

산업용지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, 관광산업 등을 지원하며,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